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- 475호

「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」(국토교통부훈령 제1548호, 2022.8.17.)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공고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441호, 2023.4.14.)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20 일

국토교통부장관

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(정정) 행정예고

1. 정정이유

- 별표2 안전성 평가에 대한 배점 및 평가 산식 오류 정정

2. 정정내용

- 가. 항공운송서비스 중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(별표2)의 '내용 변경 및 배점 수정

개정안(당초)

[별표 2] 항공운송서비스 중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(제7조제1항 관련)

2. 세부평가항목 및 기준

세부 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 기준
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(20점)	1. 항공기 사고 발생률(인명피해(사망, 중상 10명 이상)가 없는 사고에 한함)	15	◦ 최근 2년 이내 1백만 비행횟수 당 사고발생 건수를 배점에서 뺀 점수 * 계산식 : $15 - \{(\text{최근 2년간 사고발생 건수} \times 100\text{만}) / \text{최근 2년간 비행횟수}\}$
	2. 항공기 준사고 발생률	5	◦ 최근 2년 이내 25만 비행횟수 당 준사고 발생 건수를 배점에서 뺀 점수 * 계산식 : $5 - \{(\text{최근 2년간 준사고 발생 건수} \times 25\text{만}) / \text{최근 2년간 비행횟수}\}$
행정처분 (30점)	1.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운항정지 건수	10	◦ 10만 비행횟수 당 부과 받은 과징금 및 운항정지 건수를 배점에서 뺀 점수 * 계산식 : $10 - \{(\text{최근 1년간 과징금 및 운항정지 건수} \times 10\text{만}) / \text{최근 1년간 비행횟수}\}$
	2. 안전 관련 과징금 부과액(운항정지로 처분된 경우 과징금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)	10	◦ 과징금 1억원 초과시 2만 비행횟수 당 1억원을 초과한 과징금액을 1억원으로 나눈 점수를 배점에서 뺀 점수 * 계산식 : $10 - \{(\text{1억원 초과 과징금액} \times 2\text{만}) / \text{최근 1년간 비행횟수} \div 1\text{억}\}$ - 운항정지로 처분된 경우, 해당 과징금 처분조항에 명시된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. 운항정지 일수를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환산한다.
	3. 항공종사자 처분 건수	10	◦ 1000명당 자격증명효력 정지 및 취소된 종사자 수 당 0.5점씩을 배점에서 뺀 점수 * 계산식 : $10 - \{(\text{자격증명 효력정지 및 취소된 항공종사자 수} \times 1000) / \text{근무 중인 항공종사자 수} \times 0.5\}$

개정안(정정)

별표 2] 항공운송서비스 중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(제7조제1항 관련)

2. 세부평가항목 및 기준

세부 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 기준
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(30점)	1. 항공기 사고 발생률(인명피해(사망, 중상 10명 이상)가 없는 사고에 한함)	20	◦ 최근 2년 이내 1백만 비행횟수 당 사고발생 건수를 배점에서 뺀 점수 * 계산식 : $20 - \{(\text{최근 2년간 사고발생 건수} \times 100\text{만}) / \text{최근 2년간 비행횟수}\}$
	2. 항공기 준사고 발생률	10	◦ 최근 2년 이내 25만 비행횟수 당 준사고 발생 건수를 배점에서 뺀 점수 * 계산식 : $10 - \{(\text{최근 2년간 준사고 발생 건수} \times 25\text{만}) / \text{최근 2년간 비행횟수}\}$
행정처분 (30점)	1.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운항정지 건수	10	◦ 10만 비행횟수 당 부과 받은 과징금 및 운항정지 건수를 배점에서 뺀 점수 * 계산식 : $10 - \{(\text{최근 1년간 과징금 및 운항정지 건수} \times 10\text{만}) / \text{최근 1년간 비행횟수}\}$
	2. 안전 관련 과징금 부과액(운항정지로 처분된 경우 과징금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)	10	◦ 과징금 1억원 초과시 2만 비행횟수 당 1억원을 초과한 과징금액을 1억원으로 나눈 점수를 배점에서 뺀 점수 * 계산식 : $10 - \{(\text{1억원 초과 과징금액} \times 2\text{만}) / \text{최근 1년간 비행횟수} \div 1\text{억}\}$ - 운항정지로 처분된 경우, 해당 과징금 처분조항에 명시된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. 운항정지 일수를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환산한다.
	3. 항공종사자 처분 건수	10	◦ 1000명당 자격증명효력 정지 및 취소된 종사자 수 당 0.5점씩을 배점에서 뺀 점수 * 계산식 : $10 - \{(\text{자격증명 효력정지 및 취소된 항공종사자 수} \times 1000) / \text{근무 중인 항공종사자 수} \times 0.5\}$

세부 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체 안전관리 (50점 + 최대 5점 범위내 가점)	1. 항공운항분야 국가 안전 지표· 목표 달성도	15 + 최대 5점 범위 내 가점	◦ 평가대상 기간의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, 당해년도의 국가목표*를 달성한 항공사에 15점, 미달성한 항공사에 0~12.5점을 부여하고 목표달성 항공사 중에서 초과달성 정도에 따라 5점의 범위 내에서 항공사별 가점 부여 * 연간 비행편수가 1만편 미만인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발생건수 기준 목표치로 달성여부를 판정한다. ※ 목표 달성도별 배점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목표 달성</th><th colspan="6">목표치 달성 정도</th></tr><tr><th>90%이상 100%미만</th><th>80%이상 90%미만</th><th>70%이상 80%미만</th><th>60%이상 70%미만</th><th>50%이상 60%미만</th><th>50% 미만</th></tr><tr><td>배점</td><td>15점</td><td>12.5점</td><td>10.0점</td><td>7.5점</td><td>5.0점</td><td>2.5점</td><td>0점</td></tr></table> +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3">초과 달성 순위별 가점</th></tr><tr><th>1위</th><th>2위</th><th>3위</th></tr><tr><td>배점</td><td>5점</td><td>3점</td><td>1점</td></tr></table>	구분	목표 달성	목표치 달성 정도						90%이상 100%미만	80%이상 90%미만	70%이상 80%미만	60%이상 70%미만	50%이상 60%미만	50% 미만	배점	15점	12.5점	10.0점	7.5점	5.0점	2.5점	0점	구분	초과 달성 순위별 가점			1위	2위	3위	배점	5점	3점	1점
	구분	목표 달성	목표치 달성 정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90%이상 100%미만	80%이상 90%미만	70%이상 80%미만	60%이상 70%미만	50%이상 60%미만	50% 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배점	15점	12.5점	10.0점	7.5점	5.0점	2.5점	0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초과 달성 순위별 가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위	2위	3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배점	5점	3점	1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. 항공안전관리 시스템(SMS) 이행성숙도평가 단계	15	◦ 평가대상 기간 중 「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(훈령)」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※ 단계별 배점 <table><tr><th>평균</th><th>3.6~ 4.0</th><th>3.1~ 3.5</th><th>2.6~ 3.0</th><th>2.1~ 2.5</th><th>1.6~ 2.0</th><th>1.5점 이하</th></tr><tr><td>배점</td><td>15점</td><td>12.5점</td><td>10점</td><td>7.5점</td><td>5점</td><td>0점</td></tr></table>	평균	3.6~ 4.0	3.1~ 3.5	2.6~ 3.0	2.1~ 2.5	1.6~ 2.0	1.5점 이하	배점	15점	12.5점	10점	7.5점	5점	0점																			
평균	3.6~ 4.0	3.1~ 3.5	2.6~ 3.0	2.1~ 2.5	1.6~ 2.0	1.5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배점	15점	12.5점	10점	7.5점	5점	0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. 안전문화 저해 요인	10	◦ 평가대상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 1건당 2점씩을 배점에서 뺀 점수 - 「항공안전법」 제9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항공안전 관리시스템(SMS) 이행에 관한 안전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- 최고경영관리자, 총괄안전관리자, 고위관리자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(SMS) 이행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제보가 국토교통부, 언론, 관계기관 등으로 접수(국토교통부가 사실조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세부 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체 안전관리 (40점 + 최대 5점 범위내 가점)	1. 항공운항분야 국가 안전 지표· 목표 달성도	15 + 최대 5점 범위 내 가점	◦ 평가대상 기간의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, 당해년도의 국가목표*를 달성한 항공사에 15점, 미달성한 항공사에 0~12.5점을 부여하고 목표달성 항공사 중에서 초과달성 정도에 따라 5점의 범위 내에서 항공사별 가점 부여 * 연간 비행편수가 1만편 미만인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발생건수 기준 목표치로 달성여부를 판정한다. ※ 목표 달성도별 배점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목표 달성</th><th colspan="6">목표치 달성 정도</th></tr><tr><th>90%이상 100%미만</th><th>80%이상 90%미만</th><th>70%이상 80%미만</th><th>60%이상 70%미만</th><th>50%이상 60%미만</th><th>50% 미만</th></tr><tr><td>배점</td><td>15점</td><td>12.5점</td><td>10.0점</td><td>7.5점</td><td>5.0점</td><td>2.5점</td><td>0점</td></tr></table> +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3">초과 달성 순위별 가점</th></tr><tr><th>1위</th><th>2위</th><th>3위</th></tr><tr><td>배점</td><td>5점</td><td>3점</td><td>1점</td></tr></table>	구분	목표 달성	목표치 달성 정도						90%이상 100%미만	80%이상 90%미만	70%이상 80%미만	60%이상 70%미만	50%이상 60%미만	50% 미만	배점	15점	12.5점	10.0점	7.5점	5.0점	2.5점	0점	구분	초과 달성 순위별 가점			1위	2위	3위	배점	5점	3점	1점
	구분	목표 달성	목표치 달성 정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90%이상 100%미만	80%이상 90%미만	70%이상 80%미만	60%이상 70%미만	50%이상 60%미만	50% 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배점	15점	12.5점	10.0점	7.5점	5.0점	2.5점	0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초과 달성 순위별 가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위	2위	3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배점	5점	3점	1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. 항공안전관리 시스템(SMS) 이행성숙도평가 단계	15	◦ 평가대상 기간 중 「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(훈령)」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※ 단계별 배점 <table><tr><th>평균</th><th>3.6~ 4.0</th><th>3.1~ 3.5</th><th>2.6~ 3.0</th><th>2.1~ 2.5</th><th>1.6~ 2.0</th><th>1.5점 이하</th></tr><tr><td>배점</td><td>15점</td><td>12.5점</td><td>10점</td><td>7.5점</td><td>5점</td><td>0점</td></tr></table>	평균	3.6~ 4.0	3.1~ 3.5	2.6~ 3.0	2.1~ 2.5	1.6~ 2.0	1.5점 이하	배점	15점	12.5점	10점	7.5점	5점	0점																			
평균	3.6~ 4.0	3.1~ 3.5	2.6~ 3.0	2.1~ 2.5	1.6~ 2.0	1.5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배점	15점	12.5점	10점	7.5점	5점	0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. 안전문화 저해 요인	5	◦ 평가대상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 1건당 1점씩을 배점에서 뺀 점수 - 「항공안전법」 제9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항공안전 관리시스템(SMS) 이행에 관한 안전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- 최고경영관리자, 총괄안전관리자, 고위관리자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(SMS) 이행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제보가 국토교통부, 언론, 관계기관 등으로 접수(국토교통부가 사실조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세부 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 기준												
			또는 진위확인을 실시하여 사실로 인정된 경우만 산정) * 계산식 : 10-(해당건수 × 2)												
4. 안전보고 활성도		10	◦ 최근 2년 이내 「항공안전법」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건수 대비 제61조에 따른 자율보고 건수 ※ 단계별 배점 <table><tr><td>안전보고 활성도</td><td>30 이상</td><td>20 이상</td><td>10 이상</td><td>5 이상</td><td>5 미만</td></tr><tr><td>배점</td><td>5점</td><td>4점</td><td>3점</td><td>2점</td><td>1점</td></tr></table> * 계산식 : {(최근 2년간 자율보고 건수)/(최근 2년간 의무보고 건수)}*100 - 의무보고 건수 집계 시 중복보고를 제외한다. - 의무보고 건수가 0건인 항공사의 안전보고 활성도의 경우, 나머지 항공사 안전보고 활성화 점수의 평균과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. - 자율보고 건수 집계는 자율보고제도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며, 보고서에 보고자 소속이 입력된 경우만 집계한다	안전보고 활성도	30 이상	20 이상	10 이상	5 이상	5 미만	배점	5점	4점	3점	2점	1점
안전보고 활성도	30 이상	20 이상	10 이상	5 이상	5 미만										
배점	5점	4점	3점	2점	1점										

세부 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 기준												
			또는 진위확인을 실시하여 사실로 인정된 경우만 산정) * 계산식 : 5 - 해당건수												
4. 안전보고 활성도		5	◦ 최근 2년 이내 「항공안전법」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건수 대비 제61조에 따른 자율보고 건수 ※ 단계별 배점 <table><tr><td>안전보고 활성도</td><td>30 이상</td><td>20 이상</td><td>10 이상</td><td>5 이상</td><td>5 미만</td></tr><tr><td>배점</td><td>5점</td><td>4점</td><td>3점</td><td>2점</td><td>1점</td></tr></table> * 계산식 : {(최근 2년간 자율보고 건수)/(최근 2년간 의무보고 건수)}*100 - 의무보고 건수 집계 시 중복보고를 제외한다. - 의무보고 건수가 0건인 항공사의 안전보고 활성도의 경우, 나머지 항공사 안전보고 활성화 점수의 평균과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. - 자율보고 건수 집계는 자율보고제도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며, 보고서에 보고자 소속이 입력된 경우만 집계한다	안전보고 활성도	30 이상	20 이상	10 이상	5 이상	5 미만	배점	5점	4점	3점	2점	1점
안전보고 활성도	30 이상	20 이상	10 이상	5 이상	5 미만										
배점	5점	4점	3점	2점	1점										